

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5. 7. 15. 조례 제376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ESG 경영”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.
2. “산하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
 - 나. 「안양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3. “중소기업”이란 안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,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
2.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, 운영지침, 실태, 조사 및 관리방안,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

3.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ESG 경영 홍보 및 교육
2.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
3.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
4. ESG 경영 공시 관련 대응 방안 및 지원
5.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기업,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·단체 등에 「안양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